



제1587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6 5 호	2021년 신중년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 원스톱 지원 일자 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
○ 공	고 제 1 6 6 호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 고서 공시송달 공고	12
○ 공	고 제 1 8 0 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 공고	16
○ 공	고 제 1 8 2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20
○ 공	고 제 1 9 3 호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23
○ 공	고 제 2 0 4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4
○ 공	고 제 2 2 1 호	소곡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라환경영향평가 주민 의 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26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호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8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 고 및 의견수렴	43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호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 법예고 및 의견수렴	59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호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9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호	「남동구 무주택 신흥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0
○ 의회사무국공고 제	6 호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09
○ 의회사무국공고 제	7 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및 의견수렴	121
○ 의회사무국공고 제	8 호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34
○ 의회사무국공고 제	9 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5
○ 보 건 소 공 고 제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60
○ 보 건 소 공 고 제	1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61

고 시

○ 고	시 제 1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62
○ 고	시 제 1 4 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165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5호

신중년 재난소방교육 · 방역 원스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1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난소방교육·방역 원스톱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목적

-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 등 안전·재난 분야의 실무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하여 퇴직한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안전 분야 교육을 실시 및 방역업무를 지원하여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란?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역현안 해결 및 신중년 소득창출 기회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 근무(활동) 분야

- 관내 취약기관(아동 및 사회적기업 등) 재난소방안전 교육 및 방역 업무지원
 - 재 난 : 각종 감염병 관련 내용 안내 및 지진, 산사태 발생 시 대피 교육
 - 소 방 :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 안 전 : 심폐소생술(CPR)교육 및 생활 속 위급환자 대응법
 - 방 역 : 교육대상 방문기관 방역서비스 지원

2. 모집개요

☐ 사 업 명 : 신중년 재난소방교육·방역 원스톱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3. 2.(화) ~ 12. 31.(금) (10개월)

☐ 접수기간 : 2021. 2. 3.(수) ~ 2. 9.(화) (7일)

☐ 모집인원 : 3명

☐ 모집분야 : 재난소방·안전 교육 및 방역분야(3명)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lsm3862@korea.kr)

※ 2월 3일 00시00분에서 2월 9일 23시 59분까지 도착된 전자우편 한해 인정
(증빙서류 포함)

☐ 문 의 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2-453-5983)

3. 신청자격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공고일 기준 해당 연령대 출생자) 인천시민으로서 다음 공통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참여요건 중 하나를 갖춰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분 야	자격요건
공 통	▶ 인천광역시 거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 인력 * 공고일 기준 1951년~1971년 출생자로 위 연령대 해당자 ▶ 재난소방·안전 관련분야 근무 유경험자 ▶ 자차 이용 출장업무 가능자
사업 분야 경력자 및 관련 직종 근무자	▶ 재난, 소방, 방역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재난, 소방, 방역관련 『자격기본법』제2조 상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 소방 공무원 퇴직자 ▶ 재난·소방안전 및 방역 분야 교육 강사 근무경력자 ▶ 방역관련 업종 종사 경력자
	▶ 컴퓨터 관련 및 문서작성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모집일 현재, 남동구 거주자

☐ 사업 참여 배제자

- 현재 취업상태인자
- 공공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최근 3년간 2년 이상으로 가장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미경과자
- 공공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최근 3년간 2년 이상으로 가장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자 중 1년 이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참여자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 3월 ~ 12월 (10개월간)

☐ 임 금 : 월급제(시급*근무시간)

- 시 급 : 10,120원 (2021년 남동구 생활임금 적용)
- 만근 시 주차, 월차 및 출장여비(10만원 이내)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 주 5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4대 보험 의무가입

☐ 임금지급 : 익월 5일 이내 지급☐ 업무내용

분 야	근로(활동) 내용	비 고
공 통	▶ 교육 대상기관 발굴 및 협조요청 ▶ 소방·재난안전 교육 및 방역서비스 문의 안내 ▶ 남동구 내 방역지원 업무 (보건소 등 방역관련 수요부서) ▶ 기타 사업전반 행정사무관리	
소방·재난 안전교육 및 방역 지원	▶ 활동내용(교육+방역서비스) - 재난 : 화재, 지진, 산사태 등 재난상황 대처법 및 감염병(코로나19, 신종플루 등) 예방 생활수칙 교육 - 소방 : 소화기 사용법, CPR(심폐소생술), - 방역 서비스 지원(대상기관 요청 시) ▶ 대상 기관 - 관내 취약계층(아동·노인), 사회적기업(약50곳) 등	

5. 제출서류

☐ 필수 사항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 전문경력 기술서 1부. [\[서식3\]](#)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4\]](#)
-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별도서식 없음】**

☐ 선택 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별도서식 없음】**

6. 선발방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중 2차 면접심사 실시

* 1차 서류 심사 시 최종 선발인원(3명)의 2배수 선발(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16.(화) ※ 합격자 한해 개별통보	2021. 2. 17.(수) 오후 2시 (예정)	2021. 2. 19.(금) ※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신청서류 필수 제출사항 누락 및 허위 신청사항 발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 취소

8. 문의사항

☐ 문의처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2-453-598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 대학원(박사) 졸 ☐ 대학원(석사) 졸 ☐ 대학교 졸 ☐ 전문대 졸 ☐ 기타 전공 ()		

1.경력 및 자격

1.1 경력(가장 마지막 경력과 주요경력만 기재)

회사명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1.2 자격

자격증명(등급포함)	취득일	취득기관	유형
			*1. 국가기술자격 2.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3. 공인민간자격 4. 등록민간자격

2.교육훈련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시간)	교육이수기관
	(시간)	
	(시간)	
	(시간)	

- 본인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활동 실적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참여자 제외 요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필요시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담당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화·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면)
 - 2)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학력, 경력, 자격, 교육, 가족사항	<u>동의일로부터 10년</u>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u>한부모가족여부 등</u>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u>참여자 선정종료시</u>
(본인) <u>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u>	<u>동의일로부터 10년</u>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주민등록번호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1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문경력 기술서

성명		연 락 처	
전문경력 내용	-		
유사경력 내용	-		
자기소개/ 사업참여 희망 사유/ 활동계획 등	-		
2021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남동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사업 참여자 자격확인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 거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66호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3. 공시송달 공고대상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76 인근 도로상	쇠 파이프	20여개	남동구 자체집행

4. 공고기간 : 2021. 1. 21 ~ 2021. 2. 5.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대상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21. 2.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 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

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 도시경관과(☎ 032-453-2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치물 위치 및 현장사진



제2020- 호

행정대집행 고고서**성명 : 노상적치물 (쇠파이프) 소유자 귀하****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76**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 노상적치물(쇠파이프 20여 개)에 대하여 2020년 1월 8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보도)의 통행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2월 10일 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및 제96조에 의거 명령하며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남동구 논현동 66-76 도로상	쇠 파이프	20여개	남동구 자체 집행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2020년 1월 21일

남 동 구 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0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 공고

남동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만의 차별화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내포할 수 있는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 **공 모 명** :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1. 2. 1. ~ 2. 19.(19일간)
- **응모자격** : 누구나(연령, 지역 제한 없음)
- **공모주제** : 남동구 아동친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슬로건
- **응모형식**
 - 아동친화도시 가치를 내포한 남동구의 미래비전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
 - 타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참신하고 간결한 슬로건
 - 한글, 기호, 외국어 등 다양한 표기 가능
- **응모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이메일: iou7000@korea.kr
 - 팩스: 032-453-5879
 - 방문: 남동구평생학습관내 아동복지과(아동친화팀)
 - ▶ 방문신청의 경우 근무시간 내(월~금 09:00 ~ 18:00) 방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증축동 4층, 아동복지과

▶ 응모마감은 2021. 2. 19.(금) 18:00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결과발표** : 남동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2021년 3. 31(예정) ※발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7명 시상(온누리상품권 / 별도 시상식 미 개최)

구분	인원	시상금	비고
최우수	1	온누리상품권(30만원)	
우 수	2	온누리상품권(20만원)	
장 려	4	온누리상품권(10만원)	

○ **응모 시 유의사항**

- 응모는 1인 1점으로 한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될 경우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선 접수된 출품작만 인정함.
-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남동구에 귀속되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은 남동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향후 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응모자(출품자)에게 있음
- 시상 후 표절 및 타 공모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심사방법 및 수상작 수는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전 일정과 내용은 구(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남동구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 ☎ 032) 453-5872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제안내용	슬로건 명칭					
	슬로건의 미					
참고사항	① 응모는 1인 1점으로 한정, 슬로건 의미도 반드시 기재해야만 유효함 ② 동일한 명칭이 접수될 경우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선 접수된 명칭만 인정 ③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일체의 권리는 남동구에 귀속되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④ 수상작은 남동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향후 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⑤ 시상 후 표절 및 타 공모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반환됨 ⑥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응모자(출품자)에게 있음 ⑦ 공모전 일정과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인은 남동구청이 주관하는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참가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주체

귀하께서 제출한 개인정보는 남동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국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수집 및 이용목적

공모전 심사의 진행 및 진행단계별 결과 등 관련 정보 안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공모전 운영관리 등을 위해 활용되며 이용기간 1년(보유기간 2년)

※ 미 수상자는 공모전 결과 발표 시 까지

5.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 심사에서 제외됨

■ 저작권 및 배포 활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공모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은 남동구에 귀속되며, 남동구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남동구는 공모 당선작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홍보 등 공적인 용도로 제작, 복제,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공모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내용을 모두 숙지했으며, 제반 사항에 동의합니다.

2. 출품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응모자(출품자)에게 있습니다.

3. 당선작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남동구에 양도되며, 당선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서 및 서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안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아래 서명에 날인해주세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8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1.25. ~ 2021.2.8.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54저0646외 5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1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335	54저0646	A6 2.0 TFSI	이*유 /96****	인천광역시 서구 탁*로 *5, **3호(심*동, S***이빌)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8.31.	한국도로공사 (강원스마트하이패스센터, 수도권, 강원) 인천 서구 (교통민원과 세무1과 장애인복지과 차량민원과) 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세무2과)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인천서부경찰서 인천 계양구 (교통민원과) 서울 강북구 (주차관리과) 제이비유리캐피탈(주)
2020-00491	55주5080	아우디 A8 4.2 쿼트로	정*성 /53****	경상북도 문경시 문*읍 팔**길 4*	(주)서울 폐차사업소 /2020.12.3.	경북 문경시 (종합민원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인천 부평구 (주차지도과) 인천 계양구 (교통행정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20-00505	45두4942	아반떼 (AVANTE)	이*성 /91****	경기도 부천시 고****7번길 7, *동 **2호(고*동, 인**파트)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1.5.	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 차량등록과, 징수과)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인천시남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인천논현경찰서 경기 김포시 (교통행정과 교통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경기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부천오정경찰서 서울 종로구 (주차관리과) 인천 부평구 (주차지도과) 인천지방경찰청 (부천지청)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2020-00506	11고2590	아반떼 (AVANTE)	박*웅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9번길 1*, **5호(간*동, 삼**립)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1.9.	경기 부천시 (세무과, 오정구세무과, 오정구경제교통과, 차량등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세무과)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2020-00524	53더4296	그랜저(GR ANDEUR)	이*두 /7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2번길 1*-*1 (반*동)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1.17.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주)페퍼저축은행 경남 거제시 (징수과 차량등록과) 구미경찰서

제1587호

남동구 구보

2021. 1. 28. 목요일

						대구 달서구 (정수과) 인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거제경찰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북 구미 정수과
2020-00537	경기안산 바2510	이륜차	김*국 /7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길 1*(동)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1.25.	해당없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93호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지구의 명칭 : 수산1지구
2.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3. 사업기간 : 2018. 11. ~ 2021. 1.
4.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188필지, 65,137.3㎡
5. 다음 각 호의 사항 : 지적확정조서(붙임1) 참고
 - 가. 토지의 소재지
 - 나.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 다. 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 라.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남동구 토지정보과
8.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9.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6155)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1-20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1.27. ~ 2021.2.20.
3. 공 고 대 상 : 28우8557외 8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473	28우 8557	아반떼 (AVANTE)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72 논현시티오피스텔 지하주차타워	조*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안길 1*, **4호(본*동, 썬**빌)	2020.1 2.10. 2021.1. 4.	폐문 부재 폐문 부재	2020. 12.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0-00515	14서 3073	A6 3.0 TFSI quattro	남동구 장차로16번길 22 도로변	임*웅	경기도 시흥시 포***9번길 1*, **2호(신*동, 대**크)	2020.1 2.10. 2021.1. 4.	배달 배달	2020. 12.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0-00517	80서 1514	봉고 III 1톤	남동구 고잔동 729-10 도로	(주)비***이 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로 **0, 파**리빌딩 *층(방*동)	2020.1 2.10. 2021.1. 4.	수취불 명 수취불 명	2020. 12.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0-00522	65어 2807	BMW 730Li	남동구 구월2동 342-256 도로변	최*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5번길 *0, **2호(주*동, 리***멀타워)	2020.1 2.10. 2021.1. 5.	수취불 명 수취불 명	2020. 11.24.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0-00523	39마 6295	카니발 II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0-21 누리자타운 지하주차장	양*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길 9, **3호(두*동, 팰***아)	2020.1 1.24. 2021.1. 4.	배달 배달	2020. 11.17.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6	2020-00527	13주 6378	포르테	남동구 논현동 762-3 늘솔길공원 주차장	전*익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6번길 *1, ***1호(부*동, 미*클)	2020.1 2.10. 2021.1. 4.	기타 기타	2020. 12.3.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7	2020-00532	08고 8308	라세티1.6D AT	남동구 인주대로 696 정해공업사 앞	김*미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로 7**~7*, 1**동 ***5호(늘*른 오**빌)	2020.1 2.10. 2021.1. 4.	배달 배달	2020. 12.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8	2020-00563	인천 남동 카83 77	이룬차	남동구 인주대로820번길 40 앞	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2번길 *1-*, *층(만*동)	2020.1 2.10. 2021.1. 4.	기타 기타	2020. 12.3.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9	2020-00582	69누 3805	무쏘	남동구 배려터로 13-9 온푸드 옆 발안	조*우	전라남도 완도군 고*면 고**로 4**	2020.1 2.15. 2021.1. 4.	수취 인불 명 배달	2020. 12.10.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21호

**소곡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고**

소곡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 획 명 : 소곡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일원
- 다.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라. 계획규모 : 소하천 1개소, 총 연장 0.884km
- 마. 사업내용 : 소곡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2. 공개개요

-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1년 01월 28일 ~ 02월 10일)
- 나. 공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다. 공개내용 : 붙임 참고
 - 주민 의견수렴 공고사항
 -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
 -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등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치수관리팀(☎ 032-453-8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 1호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5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강경숙·김윤숙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원칙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다. 강등, 승진 제한,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라.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공식 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희롱·성폭행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결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간접적·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

지 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4시간 2회 기준 강사료 1,100천원 및 원고료 240천원으로 총 비용 1,340천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됨.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 종 수

[참고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2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등·하교, 학습, 놀이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6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유광희·조성만·황규진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1명

☐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이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등·하교, 학습, 놀이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3.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6.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센터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처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결산) ① 센터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존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금번 의원발의 조례안(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출 순증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 주민복지국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 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호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 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촉진 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설치대상 및 계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7
----------	------

발의연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조성민·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촉진 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설치대상 및 계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물 절약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수도법」 제15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남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제6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4호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8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강경숙·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
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
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
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
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
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
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안 제5조(지원) 제1호 :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지원) 제1호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조항이 있으나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당해 조례에 의거한 예산편성 사항은 없음
- 안 제5조(지원) 제3호의 업무범위 모호함
 - 2020년 남동구 공동주택내 경비원 인권 침해 민원접수 된 바 없음
 - 안 제5조(지원) 제2호 법률지원 연계는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비예산의 업무범위가 명확하나,
 - 안 제5조(지원) 제3호 정신적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은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

- 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제외 한다

-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 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법 제 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 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포장
- 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
- 다.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로의 교체를 포함한다.
- 라. 부대시설(담장·옹벽·축대·보안등)의 유지·보수. (일부개정 2017. 5. 10.)
- 마.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
- 바. 다세대주택 공용 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기존 감지등 교체는 제외) 하는 사업
- 사. 옥상방수공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2. 21.)
- 아.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개선(「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을 대상으로 하며, 냉·난방기기 설치하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1.)
-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이동 2018. 12. 21.]

3.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보강 지원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9. 6. 28.)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중 D, E등급에 한정한다) (개정 2019. 6. 28.)

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4.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호신설 2019. 3. 8.]

② (삭제 2017. 5. 10.)

③ (삭제 2017. 5. 10.)

④ (삭제 2017. 5. 10.)

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별표1(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규정에 따르며, 각 공동주택별로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5. 15, 2017. 5. 10, 2018. 12. 21., 2019. 6. 28.)

⑥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10.)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5호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대장의 작성·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9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유광희·조성민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대장의 작성·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주거기본법」 제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0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임대 거주자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택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희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주 소				
세대주 남동구거주 시작일		년 월 일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임차주택	소 재 지				
현 황	임차금액(원)			소 유 자(관계)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잔액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대출거래내역 등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액(대출 잔액) 및 대출이자 납입내역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용)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 표시)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월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월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인				최초 전입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 선정일	지급일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 세출의 순증가

나. 관련조문 :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100쌍
- 대출금 1억5천만 원 이내 대출 잔액의 1%로 년 1회 100만원 한도
- 최대 3년 지원

나. 추계 결과

- 1,20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재원 조달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지방세	1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

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기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
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
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8. 3. 13.>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

- 가. 국민주택의 건설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다. 준주택의 건설
-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용자

-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마. 삭제 <2017. 8. 9.>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용자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019. 4. 23., 2019. 8. 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용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용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용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나.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6호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소요경비 지원 근거와
- 감염병 대응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 등으로 민간의료 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경우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관”이란 용어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근거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
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0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최재현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소요경비 지원 근거와
- 감염병 대응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단 등으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경우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기관”이란 용어의 신설 (안 제2조제3호)
-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근거조항 신설 (안 제19조의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의료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제30조
- 「지역의료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u><신설></u>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19조의2 제2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2항

- ②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진단은 개별 의료기관의 검사장비 및 운영인력에 따라 진단여부 및 검사비용이 결정되는 재량 의료행위로 건강진단 발급비용은 비급여임.
- 관내 건강진단서 발급 의료기관(4개소) 검사비용

구분 (병·의원별)	평균비용	의원급			병원급	비고
		○○의원	○○내과	○○내과	○○병원	
금액	23,000원	10,000원	25,000원	35,000원	25,000원	

- 2020년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건수

구분	보건소	○○의원	○○의원	○○의원	○○병원	계
건수	10,295	46,900	296	372	1,989	59,852
보건소분 비율별 배분		56,639(94.6%)	357(0.6%)	455(0.8%)	2,401(4.0%)	100%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 : 2,094,820천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산식)
건강 검진비	2,094,820	418,964	418,964	418,964	418,964	418,964	59,852건 *7,000원

* 4개 병의원 발급비용 최저비용을 적용(10,000원)

* 행정업무처리 인건비 별도(공무원2명, 기간제2명)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문 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세 출		418,964	418,964	418,964	418,964	418,964	2,094,820
재원 조달		구비100%	구비100%	구비100%	구비100%	구비100%	구비1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 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18,964	418,964	418,964	418,964	2,094,820
	지방세		418,964	418,964	418,964	418,964	2,094,82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답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7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1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최재현·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2. 남동구의회의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헌혈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제3항
 -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협의회의구성)의5항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적용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간 수혈용 헌혈자 지원품(1인당) : 10,000원×2,000명=20,000천원
 - 연간 위원회 수당 : 연1회×70,000원×12명=840,000원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문 경

[참고자료]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4조의3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의4에서 이동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4조의6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8호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12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년 기본법」 제3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의료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 나. 심장정지
-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 라. 고혈압
- 마. 당뇨병
- 바. 이상지질혈증
-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9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지원 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위원의 임기와 해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간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7. ~ 2.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3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6일

발 의 자 : 이선옥·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지원 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위원의 임기와 해임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간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4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남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대표식품 발굴 및 브랜드식품 육성 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9. 공중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 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한다.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의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위생 단체	① 공익활동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등 ② 위생단체협의회 공익활동 사업 등	• 단체 또는 위생단체협의회 : 연 5,000만원 이내
위생 업소	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비 ② 그 밖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1개 업소 : 연 1,000만원 이내

※ 공통조건

- 1)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권고
- 2) 위생단체(협의회) 및 위생업소 지원 후 2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반현황	업소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업종		영업형태	
	소재지			
	건물관리 (해당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신청내역	☐ 위생단체 사업 지원 ☐ 위생업소 사업 지원 ☐ 기타()		
지원요구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2호 작성)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명/ 단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부 아래 참조)

시설개선 등 세부 사업		수 량	금 액(원)
1			
2			
3			
4			
5			
계			

※ 세부사업 별지 작성 가능.

6. 기타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2항에 의거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물품지원 등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으로, 신규 사업 경우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작성자 : 식품위생과장 최 성 옥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

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 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2.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1.21. ~ 2021.2.4.(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9 -0203653	내고향왕만두	지*향	논고개로 120, 논현프라자 1층 105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1.17.	2021.2.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2.4.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1월 2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2.9.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1.25. ~ 2021.2.8.(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위탁급식영업	2003 -0199581	제이식당(창 원내구내식당)	최*희	앵고개로 536 (고잔동, 150블록 4로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02.	2021.2.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2.8.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1월 25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44 (간석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6 (구월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44 (간석동)	2009. 7. 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예술로 34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44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02번길 5-9 (구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702번길 5-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9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51, 5-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94번길 19-10 (만수동)	2009.11.16.	만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94번길 19-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10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10 (만수동)	2009.11.16.	수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현로136번길 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7-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76 (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375번길 7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1-35, 391-36, 391-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3번길 16 (간석동)	2009.11.16.	주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2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주안로243번길 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06 (구월동)	2021.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24 (만수동)	2021.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00번길 22 (만수동)	2021.1.25.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4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폐지) 사유
승기천	소곡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21-1구 등 45필지	15,260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소곡천 지적도



